

[제2026-18호]

용역 입찰 공고

- 공고명: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
- 수요기관: 무역안보관리원

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,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입찰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.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	부서명	성명	연락처
사업담당	정보서비스팀	신기훈	(TEL) 02-6000-6430
		팀장	(E-mail) illuwa@kosti.or.kr
계약담당	운영지원팀	손지현	(TEL) 02-6000-6408
		연구원	(E-mail) lisason@kosti.or.kr

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용역명: 전략물자관리시스템 2차 재구축 사업
- 용역내용: 제안요청서 참조
- 사업기간: 계약일로부터 '26. 12. 31.
- 사업예산: 금일십사억이천사백팔십일만일천구백원정(₩1,424,811,900원, 부가세포함)
- 공고기간: 2026.7.23.(목) ~ 2026.8.21.(금)
-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: 2026.8.21.(금) 11:00
- 제안서 제출방식 : 나라장터 전자제출
- 입찰방법: 제한경쟁입찰(중소기업), 협상에 의한 계약
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 -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, 2018.12.31.)
-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: 2026.7.23.(목) 14:00
-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: 2026.8.21.(금) 11:00
- 공동계약: 가능(공동이행방식)

2. 입찰참가자격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,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
- 「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(컴퓨터관련서비스업[업종코드 1468])
 -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

-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-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,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48조 제2항 및 「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)」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(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)
-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(공동이행방식)이 가능한 사업이며, 공동수급의 경우,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,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%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.
-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(공동수급체의 구성)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
 - ※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(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, '21. 1. 1.)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
-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

3. 투찰 및 개찰

- 개찰일시: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
- 개찰장소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
-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,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
- 본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기준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

4. 입찰참가 신청서류

- “제안서 및 발표자료”
- “용역제안서 제출신청서” 및 “서약서”(서식 제1호, 제2호) 각 1부

- “법인인감증명서” 및 “사용인감계” 각 1부
- 대리인 참석의 경우 “위임장” 및 “재직증명서” 각 1부(필요시)
- “법인등기부등본” 1부(개인사업자의 경우,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)
- “사업자등록증”(원본 대조필 날인)
- “입찰보증금” 또는 “이행보증보험증권” 1부
- “소프트웨어사업자(분야: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) 신고확인서” 1부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「중·소기업·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」에 따라 발급된 “중·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”(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) 1부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,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“직접생산확인증명서”(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‘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[8111189901]’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) 1부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,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출한 “신용평가등급 확인서” 1부
- 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”(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) 1부
- 연합체(Consortium) 경우, “공동수급표준협정서”(서식 제6호)와 구성원의 “사업자등록증”, 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”, “법인등기부등본”, “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”, 각 1부
- “청렴계약이행서약서” 1부
-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별지 서류 및 증빙 각 1부

5. 제안서 평가

- 평가일시 및 장소: 개찰 후 개별통보*

* 세부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

6.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

-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(90%)와 가격평가(10%)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
 - 세부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
-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-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,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
 -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
-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, 협상 성립 시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

7.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대한 사항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/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
-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(협상 완료일)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 (10일 이내)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됨

8. 입찰의 무효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9조 제4항,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
-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(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

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, 각자 대표도 해당)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, 대표자와 다른 경우(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)

9. 참고사항

- 입찰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기획재정부 계약예규, 제안요청서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
- 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용역희망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, 계약해지 될 수 있음
- 본 공고와 별첨된 제안요청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,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함
- 하도급의 경우,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「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을 적용하여 승인

※ 별첨: 제안요청서(RFP) 1부(서식 포함). 끝.

위와 같이 공고함.

2026.7.23.

무 역 안 보 관 리 원 장